

## 자원봉사센터 운영 규정

- 2003. 06. 27. 전면개정
- 2005. 07. 01. 전면개정
- 2009. 06. 30. 부분개정
- 2010. 08. 01. 부분개정
- 2012. 08. 01. 부분개정
- 2016. 04. 01. 부분개정
- 2017. 05. 01. 부분개정
- 2020. 01. 01. 부분개정
- 2021. 11. 01. 부분개정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국가와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모든 국민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사회 변화의 원동력으로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으로 실천하여 자기쇄신과 사회 개혁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.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 자원봉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가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‘자원봉사센터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대전보건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교직원에 의한 모든 자원봉사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.<개정 2020.01.01.>

**제3조** 삭제<2021.11.01.>

**제4조(사업)** “센터”는 제 1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학내외 자원봉사활동 기획 및 운영
2. 자원봉사자 및 “센터”의 DB구축 및 자원봉사활동 관리
3. 자원봉사자 교육의 기획 및 운영
4. 학생 및 교직원의 전문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
5. 학내외 자원봉사실습장 기획 및 운영
6. 자원봉사단체간의 협력 공동체 인프라 구축 및 운영

### 제2장 조직

**제5조(조직)** ① “센터”는 센터장을 두며, 학생·취업처장이 겸직한다.<개정 2017.05.01., 2020.01.01.>

② 센터장은 “센터”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.

③ 센터장은 “센터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팀장 및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. 다만, “센터”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·취업처 학생팀 직원 중 겸무를 명할 수 있다.<개정 2016.04.01., 2020.01.01., 2021.11.01..>

**제6조(구성)** ①“센터“는 기획운영팀, 교육팀 등을 둘 수 있으며, 센터장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재가를 얻어 추가로 팀을 구성할 수 있다.

②각 팀은 1인 이상의 전임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되며, 팀장은 전임교원 중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③팀장은 센터장을 보좌하고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.

**제7조(직원)** ①“센터“는 직원(연구원, 조교포함)을 둘 수 있다.

②“센터“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임명한다.

**제8조(교직원봉사단)** 대학 교직원으로 5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교직원 봉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.

①교직원 봉사단의 명칭은 구성된 봉사단의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.

②교직원 봉사단의 단장은 해당 봉사단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.

**제9조(학과봉사단)** 본교 소속 학과는 학과단위의 재학생 및 교수로 구성된 학과봉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.

①학과봉사단의 명칭은 학과의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.

②학과봉사단의 단장은 해당 학과장으로 한다.

**제10조(전공봉사동아리) 삭제**

### 제3장 운영위원회

**제11조(설치)**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둔다.

**제12조(구성)**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,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단, 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임명으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③간사는 담당자으로 한다.<개정 2016.04.01., 2020.01.01.>

**제13조(임기)** 본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단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14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2. 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
3. 자원봉사 관련 사업 운영에 대한 사항
4. 기타 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

**제15조(회의)**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발의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.

**제16조(의결)** 위원회는 재적위원 2/3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# 제4장 재정

제17조 삭제<2021.11.01.>

제18조(예산 및 결산) 센터의 예산 및 결산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대학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를 한다.

제5장 보칙

제19조(규정개정) 이 규정의 개정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20조(위임) 위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장으로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21조(자료요청)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 학과 및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